

단설대학원 정책의 기본방향

김 영 식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

1. 제도의 도입 배경

1) 특성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대학원의 문제점

재 우리나라의 대학원은 그 이념이나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학원 교육을 대학교육의 핵심적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학교육의 부수적 위치로 인식해 온 경향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직제에서 대학원 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없는 문제라든지, 대학원 소속의 전임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학부 소속의 교원이 대학원 강의까지 맡고 있는 현실을 보면 대학원 교육의 위상이 어떠한지는 자명해진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원들은

설립목적이나 교육여건에 관계없이 유사한 교육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목표와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각 대학원도 특성이 없고 모든 학과를 획일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교육이 이미 보편화 단계에 들어선 오늘날 대학원 교육은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원 교육의 목적도 기초학문 중심의 대학원 교육에서 벗어나, 오늘날 다양하게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 또한 대학원이 맡아야 할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학원 교육의 목적은

학술 진흥 및 교수·학자의 양성 그리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고급 두뇌인력의 양성이 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행 대학원 제도와 틀만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검토가 바로 단설대학원 제도 도입이 아닌가 생각된다.

2) 대학원 교육의 수요와 역할 변화

20세기 산업사회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사 학위 수준의 직업 기술 인력만으로도 사회 경제적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와 지식 산업 사회에서는 고도의 이론적 지식과 전문 직업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석·박사 학위 수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종래의 자본·자원 집약적 산업구조로부터 기술 및 지식 집약적 후기 산업사회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급속한 재편은 사회 각 부문에 걸쳐 직종의 분화와 다원화를 촉진할 것이고, 이를 선도할 미래형 인재 양성이 크게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경험의 겸비를 요구하는 전문직종의 비중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인재가 필요할 것이고, 새롭게 비중이 높아지는 고급 인력 양성과 병행하여 기존 인력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적용 훈련,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개발 등이 앞으로의 인력 양성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직업 분야에서 고도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

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정책 수립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2. 추진 과정

정부는 지난 1995년 5월 31일 발표한 교육개혁안에서도 단설대학원 제도 도입과 아울러 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으며, 교육부는 전문가의 의견과 검토를 거쳐 '95년 8월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단설대학원 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만을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대학원의 유형을 각각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이 양적으로는 많은 팽창을 해왔으나, 교육이념이나 체제면에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모두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됨으로써 질적 수월성 추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성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대학원은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자를 양성하고, 전문대학원은 특정 직업과 연계된 분야 중심의 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며,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의 재교육에 중점을 둔 대학원으로 분류한 것이다.

또한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맞아 고급 인력 양성의 종추적 역할을 맡아야 하는 대학원이 현행 제도로는 제 역할을 수행하기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대학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단설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학사 과정 없이 대학원만으로 구성된 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95년 12월

교육법을 개정하였다(편의상 부르는 단설대학원은 교육법에서는 '대학원 대학'으로 명기하였음). 아울러 후속 법령인 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원 운영 규정 제정을 금년 3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3. 정책의 기본방향

앞으로 단설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 논의중에 있으며, 선진국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1) 설립·운영 주체

단설대학원의 설립도 대학의 설립과 마찬가지로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학교법인을 설립·운영 주체로 하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단설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에도 KAIST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은 특수법인체 형태로 단설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설립 기준

단설대학원의 설립 기준은 현재 논의중이어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교사 면적 기준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문 계열에 따라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인문사회 12㎡, 자연과학 17㎡, 공학 20㎡, 예체능 19㎡, 의학 계열은 20㎡로 정할 계획이며, 교수 1인당 학생수는 학사 과정의 2배 정도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학사 과정의 교수 1인당 학생비는 자연과학

·공학 계열의 경우 1:20으로 정하고 있는데, 단설대학원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비를 1:10으로 정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공학 계열의 총 정원 200명 규모의 단설대학원을 설립한다면 20명의 전임 교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외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 항목으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3) 단설대학원 설립 형태

위에서 설명한 대학원의 유형 분류에 따라 단설대학원 설립이 가능한 형태는 제도 도입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아 일반대학원을 단설대학원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나 재교육 기능 등 평생교육 차원에서 운영하는 특수대학원 등을 단설대학원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설립 분야

단설대학원의 설립 분야는 작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안에 의하면 정보 통신, 통상 외교, 국제관계 및 산업디자인 분야 등을 예시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발표된 제2차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원 설립을 제안하면서 의학, 신학, 법학 등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예시한 전문대학원 제도도 단설대학원 형태로 설립·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제2차 교육개혁안에서 예시한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내용을 소개하면서 단설대학원 설립 분야를 설명하고자 한다.

① 의학 전문대학원

유능한 의사 양성을 위하여 현행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사 학위 소

지자가 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4년간의 전문 의학교육을 이수하는 ‘의학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다.

— 의사 양성 전문대학원을 마친 사람에게 의료학 석사(M.D.)를 수여하고, 전문의(종합의[general practitioner] 및 가정의 포함) 수련과정을 포함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의료학 박사 학위(가칭 Doctor of Medical Science)를 수여할 수 있다.

— 의학 및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대학원에 M.D.+Ph.D. 복합과정을 둔다. 학술박사(Ph.D.) 과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의 수련과정을 필한 자에게 수여되는 의료학 박사 과정과 학술박사 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다. 학술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의료학 박사 과정 이수를 원하는 경우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 새로운 8(4+4)년제인 의학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운영할 것인지 또는 현재의 6(2+4)년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위의 2가지 제도를 병행 운영할 것인지는 대학 자체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 의학 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에서 학부 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선수과목은 최소한으로 한정하되, 각 대학의 방침에 따라 결정한다.

— 의학계 대학 및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병역법에 의한 지정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분야와 동일한 병역 혜택을 부여하고, 수학 연한이 연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28세까지의 입영 연기는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5호 개정).

— 의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법정 정원 범위 내에서의 자율적인 정원 운영, 학위 제도, 복수전공 등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뒷

반침을 마련한다.

— 의학 전문대학원 제도는 1997학년도부터 도입하도록 한다.

②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수준 높은 교양과 전문성을 구비한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4년간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들이 3년간 전문 성직자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다.

—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독교 신학의 경우,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학위를 수여한다. 또한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은 신학의 경우 목회학 석사 과정과 연계하여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과정을 둘 수 있다.

※ 종교 및 종파에 따라 별도의 학위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신학대학(교) 및 종합대학교 내의 신학부 또는 신학과의 경우 3년제 전문대학원으로 승격될 수 있다.

※ 여기서 신학대학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 제1호에 규정된 대학을 의미한다. 불교의 경우는 불교 관련 대학 및 불교학과 등을 의미한다.

—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합대학교 내의 관련학과의 경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제도는 1997학년도부터 도입하도록 한다.

③ 법학 전문대학원

○ 법학교육의 이원화

법학교육을 대학 과정에서의 일반교육과 전문대학원 과정에서의 전문교육으로 이원화한다.

— 대학 과정에서는 졸업자가 사회의 각

방면에 진출하여 활동함에 필요한 법적 소양의 기본적 법률 지식의 교육에 주력한다.

– 전문대학원에서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대학 과정에서의 법학교육 개편

대학 과정에서의 법학교육은 대학교육 개혁의 취지에 따라 다전공 복합학문 체제에 맞추어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편하도록 한다.

– 법학 전공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학점을 낮추어서 법학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법학과의 경우, 필수과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신 선택과목을 늘려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경쟁력 있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다.

– 법학 전문대학원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3년간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3년 이내에도 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법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 법학 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법학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 법학 전문대학원 설립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법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기존의 법학 교육기관이 법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법학과의 석사·박사 과정을 법학 전문대학원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법학 전문대학원의 교육 운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종 지원과 연계한다.

–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는 1997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사법시험 제도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4. 학사운영

단설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일반 대학원과는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의 선발 방법이나 입학 자격, 교육과정의 운영, 산학협동의 정도, 교수진의 구성 등에서 적어도 단설대학원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사 전형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미 단설대학원의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정책연구중에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영식/부산대학교 법대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는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으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행정학의 기본문제』가 있다.